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 사업 시행시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, 최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- 이때 가산비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하고,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가산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